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 첨부 의무화〉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564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 첨부 등	2
2.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0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1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의 저촉 여부, 기술능력 충족 여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계획의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여 주민 공론화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 첨부 등

개정안은 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때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② 허가권자의 사업계획서 적합여부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및 주민 피해 예방 대책·지원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시키는 한편, ③ 하위 규정을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u>기후에너지환경부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지정폐기물</u>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기후에너지환경부령</u>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 ----- ----- ----- <u>대통령령</u> ----- ----- <u>제25조의5에 따른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정폐기물</u> ----- ----- ----- ----- ----- ----- <u>대통령령</u> -----

같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 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u>2의2. 제25조의5에 따른 주민공론화 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u>
<신 설>	<u>2의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한 대책·지원 계획을 적절히 마련 하였는지 여부</u>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⑰ (생 략)	③ ~ ⑰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
려는 경우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
권자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며, 적합통보를 받
은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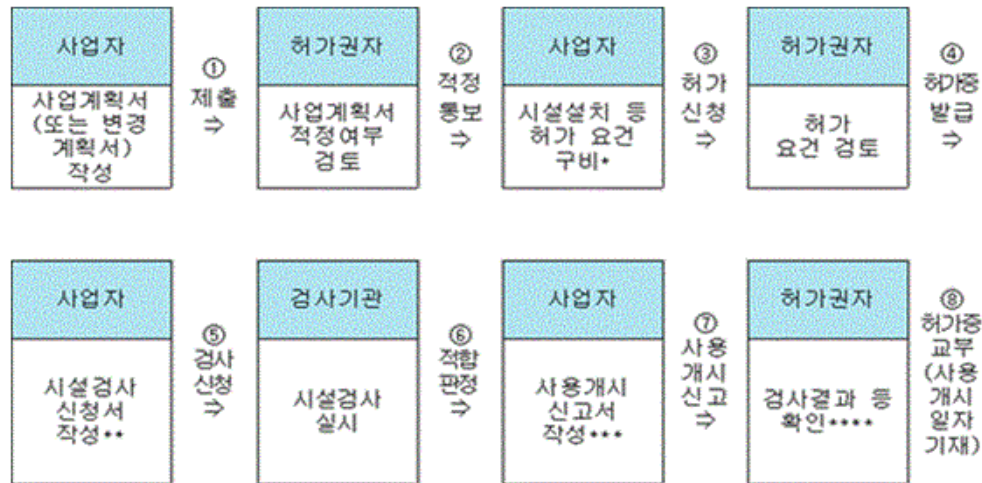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할 때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현행법 제32조2)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의제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관련 부문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기관 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부적정 통보하고 있어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는 상황임³⁾.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일정 규모⁴⁾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⁵⁾해야 함을 규정하면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와 해로운 환경영향의 제거·감소방안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사업자가 작성하여 동 사업자가 이를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⁶⁾하고 있음.

3) 참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서는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요건은 다음과 같음.

시설 구분	규모
매립시설	조성면적 3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 330만㎥ 이상
매립시설(지정폐기물)	조성면적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 25만㎥ 이상
소각시설	100톤/일 이상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음식물류 폐기물)	100톤/일 이상

5)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6)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또한, 환경오염뿐 아니라 이해관계 전반과 관련⁷⁾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전에 설치하여야 하는바,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중간·최종처분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⁸⁾로서 그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대상⁹⁾이고,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할 의무¹⁰⁾가 있으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함.

7) 법령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판 2012두11164, 2015. 1. 29.)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처분능력 100톤/일 미만인 일반소각시설 등 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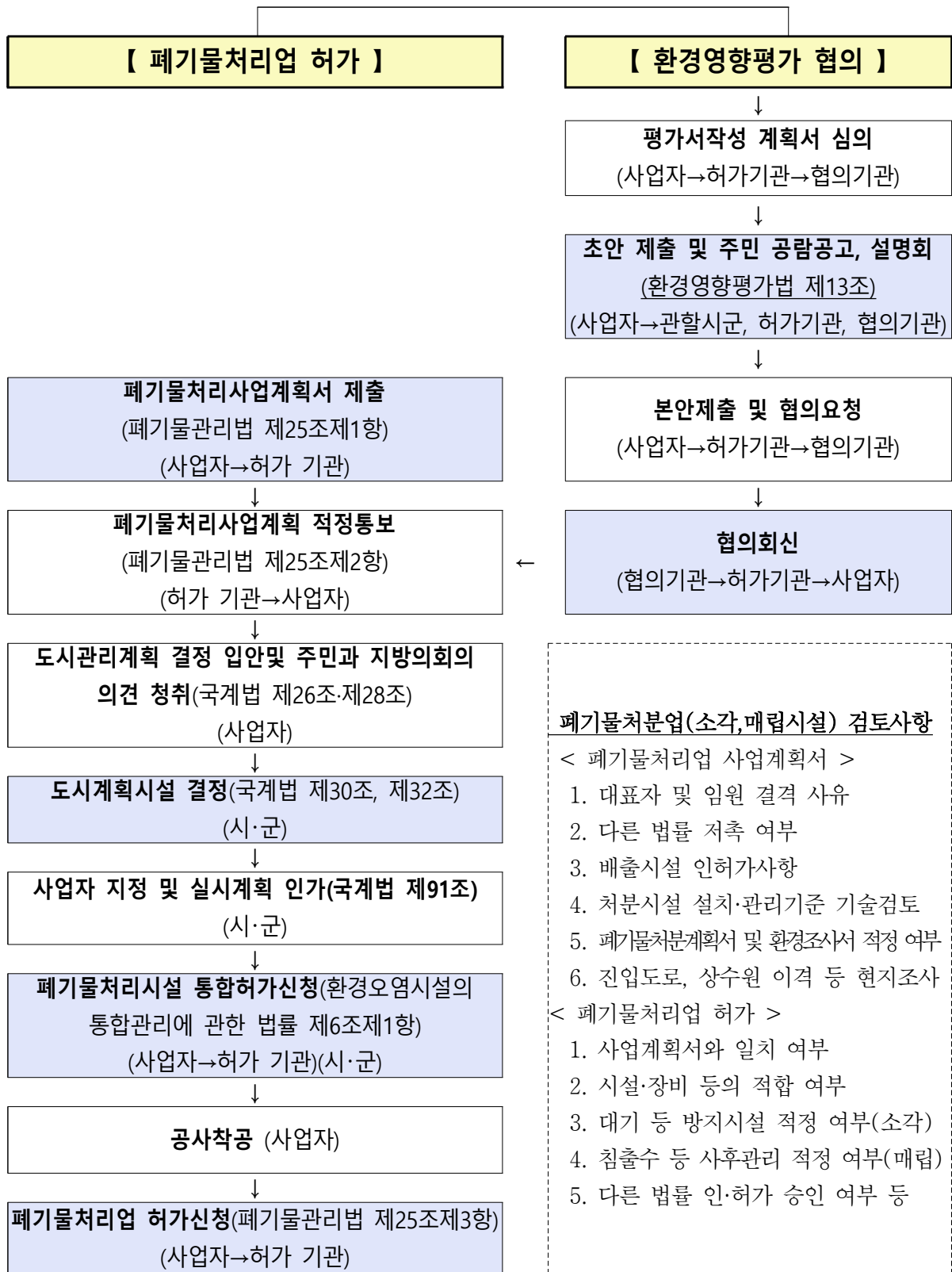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 의견 수렴절차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거칠 의무가 없는바¹¹⁾,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¹²⁾하도록 하여 지역 및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의견 수렴 제도에 관한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른 주민공론화위원회까지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원개발촉진법」 등의 유사입법¹³⁾을 참조하여 다른 법률에서

11) 예컨대 처분능력 일 100톤 미만 규모의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음.

12) 다만, 주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주민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보다는 설명회·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10p 이하 참조

1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線路)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서 기술적·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부령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자원순환단체¹⁴⁾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주민공론화위원회 반대의견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반려하게 되는 경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게 되어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4) 한국폐기물협회,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건설자원수집운반협회,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한국석유재활용협회,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한국음식물RFID종량기협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등 16개 단체

2.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 및 위원 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25조의5(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u> <u>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예정 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이하 “주민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주민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④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u> <u>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u> <u>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u>

	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u>폐기물분석전문기관 소속 임직원</u> 4. <u>시·도 의회 의원 또는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 의원</u> 5. <u>시·도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u> 6. <u>그 밖에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⑤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개정안은 주민 의견의 수렴을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의견의 수렴뿐 아니라 의견수렴절차의 내실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주민공론화위원회는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시민단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주된 목적이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대표 외 위원의 비중

이 확대될 경우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¹⁵⁾).

다음으로,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민공론화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설명회·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두고 있으며, 개정안과 유사하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운영하는 입지선정위원회¹⁶⁾ 역시 일정 규모¹⁷⁾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 시설까지 일률적으로 주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그 시설 규모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영향의 정도에 비해 규제 강도가 비례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도의 실효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 절

15) 또한, 주민대표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우호적인 1인만 위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차에 준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공람하도록 하는 한편, 설명회 및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고루 청취하고, 타당한 의견은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듣는 대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민간업계의 이견이 있는 만큼 하위법령 마련 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바 시행일을 개정안의 공포 후 6개월이 아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8